

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8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8. 19) 상정,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청소과장 김방옥)

가. 제안이유

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경우 증거인멸을 위한 처분기회 상실이 우려되므로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납부고지를 스티커 방식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및 통지
- 이 경우 10일 이내 의견진술기회 있음을 통지서에 명시
-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(10일)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함을 명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분내용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과태료부과,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“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”고 되어 있어 처분전에 청문실시로 절차변잡 및 행정지체와 비능률이 초래되는 바 폐기물 무단투기 등 경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적발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번잡과

증거인멸 등 행정지체의 비능률성은 해소되나 집행에 있어서 직원이 관내 현장을 순찰하여 적발하는 과정에서 마찰 등이 예상되며 인력배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)